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20. 8.

대일외국어고등학교
DAEI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 방안

대일외국어고등학교

- (목적)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형 운영
- (기본방침)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교육청 협의에 따라 전형일,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 변경
- 안전 관리 방안

○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형 운영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20.6.28.기준/중대본)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전환 지표 (1일확진자)	· 50명 미만	· 50~100명 미만	· 100~200명 이상 · 1주 2회 확진자 수 2배 증가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유행을 통제하도록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학교 조치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면접 방식	대면면접 (방역수칙 준수)	대면면접 (방역수칙 강화 : 3~4m 이상 거리두기)	비대면 원격면접

※ 기준일: 원서접수 시작일(2020.12.9.)

-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비상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지자체-보건소-의료기관) 구성
 - 시험장(학교) 감염관리책임자 및 감염병관리전담자 지정
 -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 여부 확인
- 안전한 전형 운영을 위한「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추진(별도 공고)
- 확진자 응시 제한 및 자가격리자 별도 응시 조치 등

< 응시 제한 조치 >

- ▶ (시험장 출입금지) 확진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응시 불가
 - ※ 단,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별도 시험장 응시 가능
- ▶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
- ▶ (응시자 / 시험관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대일외국어고등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1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 (남·여 10학급)

		전형 유형					
		정원 내			정원 외		
모집학과	학급수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총 계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외국인전형
프랑스어과	2	40	10	50	정원의 3% 이내	정원의 2% 이내	학급수 ×2명
독일어과	1	20	5	25			
일본어과	1	20	5	25			
중국어과	2	40	10	50			
스페인어과	1	20	5	25			
러시아어과	1	20	5	25			
영어과	2	40	10	50			
합 계	10	200	50	250	7	5	20

- ※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학과별로 모집하며(학과 복수지원 금지), 모집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사회통합전형은 모집정원의 20%(50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며 유형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한 후순위 지원자는 해당 학과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과별 최대 모집 인원을 정함
- [총 15명: 프랑스어과 3명, 독일어과 2명, 일본어과 1명, 중국어과 3명, 스페인어과 2명, 러시아어과 1명, 영어과 3명]
- ※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에 지원해야 함
- ※ '정원 외 전형'의 합격자는 전원 지망학과에 배정함

2 모집 단위별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음

나. 전형 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별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사회통합전형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사회 통합 전형	1 순위				
	정원외	사회 다양성 전형	2 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법정차상위 대상자</td> <td>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td> </tr> </table> 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5)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6)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학교장 추천 요건</td> <td>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td> </tr> </table> 7)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학교장 추천 요건
법정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학교장 추천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훈자자녀 전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6)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 1급~3급)의 자녀 8)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학비 면제 대상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2)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3)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외국인전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외국인전형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각목 및 제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외국인전형	1)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전형의 한부모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
-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

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라.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외 보훈자자녀 전형'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필수 요건 :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사회다양성전형 필수 요건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납부 금액(연간)을 추가 확인하여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은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나. **다문화가정 자녀(예시)**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 ※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다.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장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9.7.1.부터 용어 변경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친부·친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 금액(연간)을 모두 확인·합산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함

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의 전형 구분

- 가. (정원 내) **기회균등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정원내 선발
- 나.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모집정원의 3% 이내 정원외 선발

4. 고입특례대상자

- **정원 외 모집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구분	일시	장소	유의 사항
인터넷 원서 접수	2020.12.9.(수)~12.11.(금) ▶ 접수기간 중 24시간 운영 ▶ 단, 12.11.(금)은 13:00까지	홈페이지	○ 전형료 27,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접수방법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료를 결제해야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됨
출력원서 및 제반서류 제출	2020.12.9.(수)~12.11.(금) ▶ 접수시간: 09:00~17:00 ▶ 단, 12.11(금)의 경우 09:00~15:00	본교 접수처	○ 제반서류 제출(자기소개서 미포함) ○ 직접방문 제출(대리인 가능), 우편접수 불가
면접대상자 발표	2020.12.14.(월) 17:00	홈페이지	○ 1단계 합격 여부 확인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2020.12.14.(월) 17:00~12.16.(수) 17:00까지	홈페이지	○ 온라인 작성 제출(작성 기간 중 24시간 운영, 마감일은 17:00까지)
면접 전형일	2020.12.21.(월)	본교	○ 면접시간 추후 공지 ○ 수험표, 신분증 지참
최종합격자 발표	2020.12.24.(목) 16:00	홈페이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2021.1.14.(목)~1.15.(금)	본교
	면접 전형일	2021.1.18.(월)	본교
	합격자 발표	2021.1.20.(수)	본교
합격자 예비소집	추후 공지	본교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합격자 등록금 납부	2021.1.26.(화)~1.28.(목)	지정 금융기관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산출 기준일 : 2020.11.20.(금)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1단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다른 학교 지원 불가)

※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대상	제출 서류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및 수험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 담임교사 확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원본 2부(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처리, 단면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옵션 중 '외고·국제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4번)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중 영어, 국어, 사회(사회가 없는 경우 역사) 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포함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 ■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꼬리말의 학교명, 반, 번호, 성명 자동 삭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영역(출결, 봉사 등) 산출 기준일 2020.11.20.(금) 이후 출력 ○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①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외국인전형 지원자는 제외) ○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단, 1단계 합격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및 감점 처리(배제사항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기재 금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검증)

대 상	제 출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종학교 재적(정원외 관리, 재학사실 등) 또는 졸업증명서,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증명서(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 단, 합격증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대 상	제 출 서 류	발급처																															
사회통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호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 회 통 합 전 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국민기초생활수급자</td> <td>○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td> <td>구청, 동주민센터 (수급자증명서) 학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td> <td>○ 한부모가족증명서</td> <td>구청, 동주민센터</td> </tr> <tr> <td rowspan="4" style="background-color: #e0e0e0;">법정차상위대상자</td> <td>차상위 자활대상자</td> <td>•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td> </tr> <tr> <td>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td> <td>•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td> </tr> <tr> <td>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td> <td>•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td> </tr> <tr> <td>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td> <td>•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td> </tr> <tr> <td></td> <td>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td> <td>• 차상위계층 확인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기준 중위소득 50% 이하</td> <td>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td> <td>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기준 중위소득 60% 이하</td> <td>교육비지원확인서</td> <td>학교(교육청)</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기회균등전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추천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을실 확인서 ※ 부·모 모두 제출 </td> <td>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td> </tr>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재산세(주택) 내역이 포함되도록 출력할 것)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td> <td>구청, 동주민센터</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원본대조필: 해당 중학교 교감날인(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td> <td>해당서류 발급기관</td> </tr> </table>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수급자증명서) 학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교육청)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추천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을실 확인서 ※ 부·모 모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재산세(주택) 내역이 포함되도록 출력할 것)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원본대조필: 해당 중학교 교감날인(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수급자증명서) 학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교육청)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추천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을실 확인서 ※ 부·모 모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재산세(주택) 내역이 포함되도록 출력할 것)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원본대조필: 해당 중학교 교감날인(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서류 발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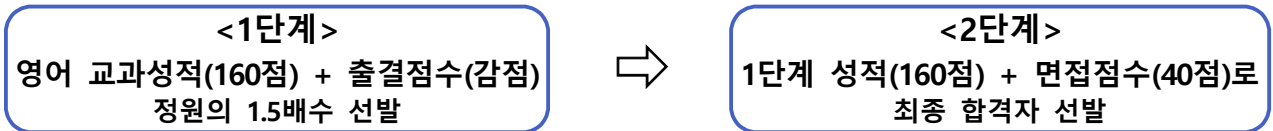
대 상		제 출 서 류		발급처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사 회 다 양 성 전 형	사회다양성 공통 (부·모 모두 제출) ※ 등본상 가족구성원 분리시에도 모두 제출	지역 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 확인서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 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 확인서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재산세(주택) 내역이 포함되도록 출력할 것)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출(전 국단위 주택분 발급) 	
	다문화가정의 자녀	※ 귀화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중 해당자료		해당서류 발급기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졸업자)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원본대조필)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 산세 납부금액(연간) 친부친모 모두 제출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서류 필요 없음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함 		
환경미화원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경찰 자녀(경위 이하)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소방공무원 자녀(지방소방위 이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보훈자자녀전형 (정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관할 보훈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제출 불필요 (중학교 확인 필요)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정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 다른 사도 출신자 : 고입특례대상자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외국인전형 (정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부·모 포함) ○ 중학교 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 VISA 발급 후 입학 	

-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제출

5 전형 절차 및 방법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1) 1단계 : '영어 교과성적(160점) + 출결점수(감점)'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가) 영어 교과성적 산출 방식

영어 교과성적(160점) =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성취도별 부여점수의 합

- ※ 영어 교과성적은 중학교 2, 3학년(4개 학기)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를 성적 산출 기준표 [표1]에 의거, 점수화하여 반영함 (학기별 40점)

[표1] 성적 산출 기준표

성취도	A	B	C	D	E
점수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 자유학기제가 포함된 학기의 경우, 성적 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함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를 반영하여 선발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 1단계 최종 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대상자로 선발함

나) 교과성적 산출 관련 유의사항

(1) 영어 교과성적 산출 유의사항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학년 제외)성적을 반영하되, 조기진급자는 3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하고,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함
- ② 2, 3학년 영어 교과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학생은 소속 중학교 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성적을 반영하되 소속 중학교의 지침이 없는 경우 교육청 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학년별로 최인접 성적을 반영함

(2) 해외 중학교 출신자 교과성적 산출 방법

- ① 최종 4학기 중 한 학기라도 국내성적이 있으면 국내성적만 반영함
- ② 국내 중학교 2, 3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해외 중학교 졸업자 : 해외 최종 4학기 영어성적을 성취도(A, B,...)로 점수를 부여함
- ③ 동점자 발생 시, 국어·사회 교과 대신 영어·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를 반영함
(※ 사회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역사 관련 교과(history 등)를 반영하며, 역사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를 반영함)

[동점자 처리 기준]
 : 3학년 2학기 영어 → 3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3학년 1학기 영어 → 3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2학기 영어 → 2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1학기 영어 → 2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순으로 반영

- ④ 해외 중학교 출신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원본 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성적 산출 방법

- 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의 원점수를 아래의 환산표에 의해 성취도를 반영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점수 환산 성취도]

원점수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성취도	A	B	C	D

다) 출결점수 산출 방식

출결점수 = - (3개 학년 미인정 결석 일수 × 1점)

- (1)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결점수 산출 기준 : 2020.11.20.(금)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 단,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학년(졸업시점) 기준으로 적용함
- (2)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합하여 3회는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하며 나머지 2회 이하는 버림
- (3) 출결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으로 함
- (4) 출결 성적이 없는 자의 출결점수 산출 : 환산된 3학년 2학기 영어 과목 성취도를 반영함

성취도	A	B	C	D	E
출결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2)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로 선발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점수 = 자기주도학습영역(꿈과 끼 영역) 점수(30점) + 인성영역 점수(10점)

나. 전형단계 영역별 배점

1단계					2단계	총 점
2-1학기	2-2학기	3-1학기	3-2학기	출결	면접	
40점	40점	40점	40점	감점	40점	200점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영역별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배점	관련 서류
자기주도학습 영역 - 꿈과 끼 영역 (30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20점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Ⅱ)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 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10점	
인성 영역 (10점)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핵심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핵심인성요소]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10점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ch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저장함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 2)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함
- 3)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 4)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우회적 또는 간접적 기재 포함)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기준에 따라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OO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5)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가)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1) 자기주도학습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2)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학교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나) 인성 영역

- (1)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2)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및 동점자 사정 기준

가. 일반전형 · 보훈자자녀전형 ·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외국인전형

본교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선발

나. 사회통합전형

- 1) 모집정원의 20%(50명)를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영어 교과성적 점수(출결 감점 포함),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함
- 2) 사회통합전형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적격자를 선발함
※ 중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추천받은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 3)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로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 중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을 배려하여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전형 단계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4)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 5)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15명)로 함

모집 학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총원
과별 최대 선발 인원	3명	2명	1명	3명	2명	1명	3명	15명 이내

- 6) 합격 후이라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함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제출

다. 동점자 사정 기준

전형 구분	동점자 사정 기준
모든 유형	<p>1) 1단계 전형의 동점자 발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및 사회 교과와 학기별 성취도' 순으로 선발 3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 3학년 1학기 국어 ⇨ 3학년 1학기 사회 ⇨ 2학년 2학기 국어 ⇨ 2학년 2학기 사회 ⇨ 2학년 1학기 국어 ⇨ 2학년 1학기 사회 순으로 성취도를 반영하여 선발함 ※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함 ※ 1단계 최종 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대상자로 선발함 <p>2) 2단계 전형의 동점자 발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점수 총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영역 점수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영역 점수 ⇨ 인성영역 점수 ⇨ 영어 교과성적 총점 ⇨ 3학년 2학기 영어 교과성적 ⇨ 3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성적 ⇨ 2학년 2학기 영어 교과성적 ⇨ 2학년 1학기 영어 교과성적 순으로 반영하여 선발함

7 합격 배제 조건

- 가.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 나.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
- 다. 이중 지원한 자
 - 1) 학교장 선발 후기고(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중 1곳만 지원 가능
 - 2) 전기고 및 후기고 합격자(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대상자는 본교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 이중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 ※ 본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교육청 시행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에 응시 불가

가. 교육비 지원

1) 지원 근거 : 2020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참여협력담당관-2253, 2020.2.27.)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고입 사회통합전형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3) 지원 내용

- 법정저소득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차상위계층)]는 학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말까지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는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일반전형, 사회다양성전형, 정원외 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차액 본인 부담)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하여 급식비 학교장 추천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졸업앨범비, 기숙사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운영 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 단계별 종료 계획」(민주시민생활교육과-10793)에 의거,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 지원(일반고수준) 종료 예정



교육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 2021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1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세부 지원 사항이 결정됨
 - ※ 아래 지원 사항은 2020학년도 기준이며, 2021학년도 신입생은 상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다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회균등전형입학자와 지원방법(금액)이 상이함

학비 및 학교운영지원비(근거: 「2020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참여협력담당관-2253, 2020.2.27.)

▶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지원 범위			비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지자체1/2, 교육청1/2
	법정차상위대상자	○	○	△	교육청
기회균등전형 입학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	교육청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중위소득 60%이하)		△	△	△	법정저소득 자격 아닌 학생

○ : 전액지원, △ : 일반고 수준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자격		지원 항목	대상 확인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40만원 이내)	NEIS ⇨ 학생복지 ⇨ 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수련활동비(14만원 이내)	
	법정차상위대상자	- 교복비(30만원 이내, 신입생)	
기회균등전형 입학	중위소득 50% 이하	- 앨범비(5만원, 고3졸업예정자) - 기숙사비(순수기숙사비 50% + 조식식비 전액)	

※ 단,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사회통합전형 입학자는 다음과 같은 본교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음

영역	프로그램	세부 내용	운영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학업 역량 강화	맞춤형 학습지도(Tutoring)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	○	○
	동문연계 학습멘토링제	본교 출신 대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도	○	○	
	학습코칭 프로그램	공부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	○	
	대일 학습멘토단	재학생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	○	
인성 정서 함양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Healing Concert 등 실시	○		
	담임교사 멘토링제	개인별 상담활동과 특별지도	○	○	○
	전문상담 프로그램	외부 상담전문가 초빙상담 실시	○	○	○
	예능특별활동	Saxophone Class 운영 및 작곡지도	○	○	
	체육특별활동	Sport Club 및 명상, 요가활동	○	○	
	문화체험 및 현장체험학습	공연, 연극 등 문화체험 기회 제공	○	○	
진로 진학 지도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진로진학 자료 제공 및 상담 실시	○	○	○
	Let's Go Together	교장, 교감선생님과의 멘토링	○	○	○
	진로진학 특별강연회	명사초청 강연을 통한 자긍심함양	○	○	○
	동문 직업인 멘토링제	동문 멘토와의 만남과 교류 실시	○	○	
	동문 전공분야 멘토링	대학생 동문을 통해 전공 탐색	○	○	
	진로탐색 독서토론	전공 관련 독서를 통한 진로 개척	○	○	
직접 지원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지원	입학전형료 지원	○		
	Friendship Camp	조별활동을 통한 특별체험 실시	○		
	Leadership Camp	심신수련 및 협력활동 실시		○	
	학습교구재 구입	신학기에 필요한 교재구입 지원			○
장학 지원	특별장학생제도	학교비에서 마련한 장학금 지급	○	○	○
	교사 및 동문 장학생제도	교사 및 동문회 기금의 장학금 지급	○	○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름	○	○	○

- ※ 본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본교 1학년(2020학년도 신입) 재학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 한국교육개발원의 「특별 교부금」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 직접 지원은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자에게만 지원됨
- ※ 세부 지원 내용은 해당 본인에게만 공지됨

다. DAEIL 한마음 장학금(사회통합전형 장학금) 지급

신입생	재학생
1) 지급액 : 연 1,000,000원 2) 지급기준 :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성적 3) 지급범위 ① 기회균등전형 상위 50% 이내 ② 사회다양성전형 상위 50% 이내	1) 지급액 : 연 1,000,000원(학기별 500,000원 지급) 2) 지급기준 : 사회통합전형 입학 당시의 자격을 유지하는 학생의 직전 학기 전교과 내신 성적 3) 지급범위 ① 기회균등전형 상위 50% 이내 ② 사회다양성전형 상위 50% 이내 4) 자격 심사 ① 기회균등전형 자격 - 교육비지원 원클릭 신청 심사결과 해당자 ② 사회다양성전형 자격 - 당해년도 자격 심사결과 해당자(학년 초)

9

기타 유의 사항

가. 이중 지원 금지

- ▶ 전기고 합격자, 타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대상자(합격자)는 본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지원의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 본교 합격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시행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추가모집 포함)에 응시할 수 없음

- 나. 제출된 서류 및 입학전형료 27,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별도)은 반환하지 않으며, 1단계 불합격자는 20,000원을 원서 작성 시 입력한 계좌번호를 통해 환불함(단, 환불 수수료 제외한 금액)
- 다.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는 면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 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성적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중학교의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외고·국제고가 없는 지역의 기말고사 미 시행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해당 과목 성취도를 해당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음)
- 마.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바.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사.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 일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선발함
- 아.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입력하고[2020.12.9.(수)~12.11.(금) 13:00까지], 인터넷 접수 후 원서 출력본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본교에 직접 제출해야 완료됨 [2020.12.9.(수)~12.10.(목) 09:00~17:00, 12.11(금) 09:00~15:00,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자.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전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참고)
- 차. 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 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시행 2020.1.9.)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 타.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파.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함



02713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16

www.daeil.or.kr

대표 02)940-1000 FAX 02-940-0605 입학홍보부 02)940-080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안내

본교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교과 및 비교과 성적, 증명사진
- 보호자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학생 장애 정보(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중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확인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사유 조회, 고등학교 이종지원 확인, 코로나 관리 대상자(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제공 항목) 학생 이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학교명, 합격 학교명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5조



■ 근거

- 2020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송부(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2492, 2019.12.12.)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협의회 결과 알림(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4451, 2020.3.9.)
-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연간 재산세 산출세액 제출(서울특별시 세무과-7770, 2020.3.31.)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 2020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합산(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 「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19.12.) 및 서울특별시 재산세 납부금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